



## 산업체위탁교육 운영 지침

규정번호	3-3-19
제정일자	2007. 11. 22
개정일자	2011. 05. 13
개정번호	Ver. 1
총페이지	3

### 1. 운영목적

- 가.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계속교육기회 제공
- 나.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전문기술인력 양성
- 다. 전문대학을 중추적인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

### 2. 실시기준

교원 및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3. 위탁생 선발

#### 가. 모집규모

- 1)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(주·야간이 동시에 개설된 경우에는 많은 쪽)의 범위 안에서 모집하되, 모집단위별 교원확보율을 초과할 수 없다.
- 2) 모집인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(교육인적자원부 예규)에 의거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나. 모집학과

우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에 한하여 모집·운영할 수 있다.

#### 다. 지원자격

- 1)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다.
- 2)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로서 산업체부설 고등학교,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 특별학급, 야간고등학교 및 방송통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있다.

#### 라. 산업체의 범위

- 1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- 2)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
- 3)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- 4)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
- 5)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
- 6)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(사업주를 포함한다)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

- 7)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
- 8) 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
- 9)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**마. 계약체결 및 경비부담, 납부방법**

- 1) 산업체 위탁교육을 시행하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반드시 사전에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2) 위탁생의 교육비 및 납부방법 등은 대학의 등록금 운영을 기준으로 하되, 위탁업체의 시설지원 및 교수요원 활용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.

**바. 모집시기**

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계획을 보고한 후 모집한다.

**사. 전형방법**

선발기준, 제출서류, 전형일정, 사정방법, 미등록 충원 등 전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4. 운영 내용**

**가. 학급편성 운영**

- 1) 위탁교육은 40명 단위의 별도학급으로 편성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별도학급의 기준단위 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2) 별도학급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, 모집 후 등록인원이 최소 인원 미만인 경우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.
- 3) 별도학급의 편성·운영이 불가능할 경우(등록인원 감소 등의 사유 포함)에는 당해 모집(주·야간 각 각 산정) 입학정원의 10% 범위 내에서 정규과정에 혼합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나. 위탁교육장 설치·운영**

- 1) 위탁교육장은 대학 내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, 위탁산업체 등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.
- 2) 별도 위탁교육장 설치에 대해서는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(교육인적자원부 예규)에 의거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다. 학사관리**

- 1) 위탁생의 휴학, 전과, 재입학 등 학적변동은 가능하며,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학칙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 단, 전과의 경우에는 산업체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.
- 2) 위탁생의 교과목 이수 인정에 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3) 위탁생에 대한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라. 재직 여부 확인**

- 1) 입학생의 경우 당해 학년도 개시일 전일 기준으로 입학자격에 대한 최종 재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와 총장이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재학생의 경우 매학기 등록시 반드시 위탁생들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직 증명서와 총장이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재직여부 확인 결과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. 단, 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.
- 4) 위탁생은 산업체를 이직한 경우 이직한 산업체의 위탁교육의뢰서와 계약서를 재직 증명서 제출기간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**마.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**

- 1)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외부위원이 1/2이상 포함되도록 한다.
- 2)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고, 산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- 3)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, 내부위원은 전임교원 약간 명으로 하며, 외부위원은 위탁업체 또는 산업체 임직원으로 한다.
- 4)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가) 위탁교육의뢰 업체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
  - 나) 위탁교육생의 선발기준
  - 다)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
  - 라)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- 마) 위탁업체의 시설 및 교육자력이 있는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
  - 바) 학교와 위탁업체와의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
  - 사) 기타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**5. 기타사항**

- 1) 총장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매년 11월 말까지 익년도의 위탁교육 실시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(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총장은 당해연도 위탁교육 실시결과를 지정된 서식에 의거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(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중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「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(교육인적자원부 예규)」에 따른다.